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

의안 번호	23-69 관련
----------	------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4. 2.

발의자 : 장정희 의원 외 1명

## 1. 수정이유

제3조제1항 노인급식 지원 대상 및 제6조제1항 급식기관의 선정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

## 2. 수정 주요내용

가.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**선정한다**”를 “**예산 범위에서 선정한다**”로 수정함.

나. 제6조제1항 중 “**공개모집하여**”를 “**공개모집하되, 지역균형을 고려하여**”로 수정함.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**선정한다**”를 “**예산 범위에서 선정한다**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**공개모집하여**”를 “**공개모집하되, 지역균형을 고려하여**”로 한다.

## 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3조(지원대상) ① <u>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(이하 ‘구청장’이라 한다)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②·③ (생략)</p> <p>제5조(운영) ①<u>구청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, 생활상태,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~ 3. (생략)</p>	<p>제3조(지원대상) ① <u>이 조례의 노인 급식 지원대상은</u>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<u>사람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‘구청장’이라 한다)이 선정한다.</u>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급식방법) ①<u>급식방법은 지원대상자</u>----- ----- -----</p> <p><u>할</u>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3조(지원대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----- <u>예산 범위에서 선정한다.</u></p> <p>1. ~ 3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·③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제5조 (개정안과 같음)</p>

② (생략)

제6조(운영자 모집)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노인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운영자를 지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운영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한다. 다만,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, 「노인복지법」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복지관, 「노인복지법」 제38조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, 종교단체 등 급식장소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·법인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운영자에게 급식 제공에 필

② (현행과 같음)

제6조(급식기관) ① ----- 노인-----  
----- 급식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선정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급식기관에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<삭제>

제6조(급식기관) ① -----  
-----  
---- 공개모집하되, 지역균형을 고려하여 -----.

② (개정안과 같음)

(개정안과 같음)

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④ 운영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수익금을 식재료 등 급식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경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.

제7조(지도점검) 구청장은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,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<신 설>

③ 급식기관은 -----  
-----  
-----.

제7조(지도점검) ----- 급식기관-----  
-----  
-----.

제8조(사업의 위탁) ①구청장은 노인급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포구 출연기관, 비영리법인,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.

③ (개정안과 같음)

제7조 (개정안과 같음)

제8조 (개정안과 같음)

제8조 (생략)

②구청장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 (현행 제8조와 같음)

제9조 (개정안과 같음)